

대출거래 추가약정서

(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

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(이하'은행'이라 합니다)와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 조 목적

이 약정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,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제 2 조 기 보유 주택

채무자가 속한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 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 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

종류	소유자	주소

② 보유 중인 주택 등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 조 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

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 조 제 2 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^{주2)}하지 않습니다.

주 2) 매매, 증여,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②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4 조 증빙자료

대출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5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채무자는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 조 제 2 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
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 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^{주3)}하고 있는 경우

주 3) 다만,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
③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

제 6 조 여신거래 약정 위반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5)}이 제한됩니다.

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5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6>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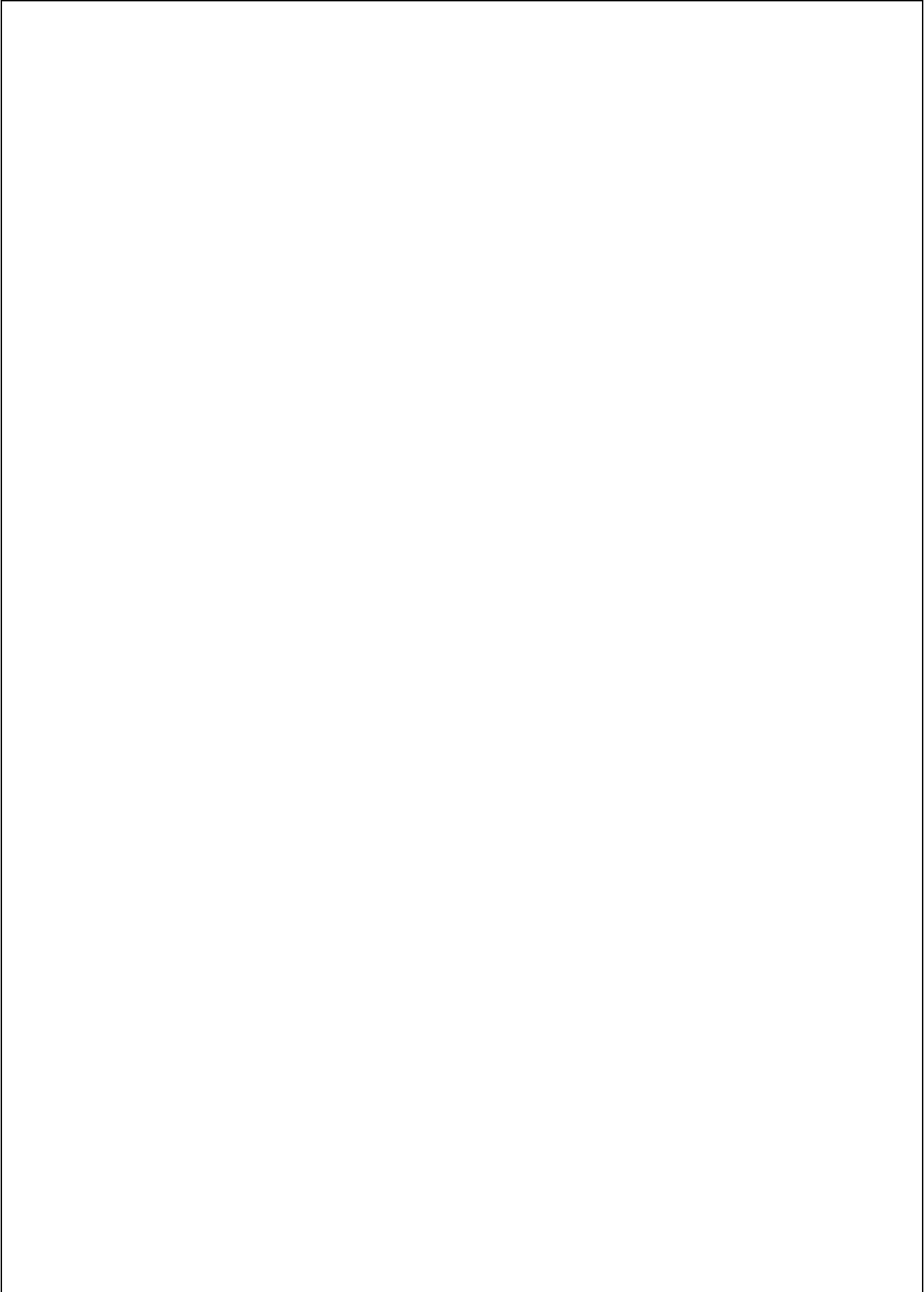
-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
채무자 성명		(서명 / 인)	
주소		년	월 일

kakaobank

2022.08.01. 시행

[별지]



변경 대비표 (대출거래 추가약정서(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)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 1 조 ~ 제 2 조 (생 략) 제 3 조 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 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 조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^{주2)}하지 않습니다. 주 2) 매매, 증여,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 ② (생 략) 제 4 조 증빙자료 대출금액이 1 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 제 5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채무자는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실행일 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 조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 ② (생 략) ③ (생 략) 제 6 조 여신거래 약정 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5)}이 제한됩니다. 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5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6>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실행일 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 조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	제 1 조 ~ 제 2 조 (현행과 같음) 제 3 조 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 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 조 제 2 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^{주2)}하지 않습니다. 주 2) 매매, 증여,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 ② (현행과 같음) 제 4 조 증빙자료 대출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 제 5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채무자는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실행일 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 조 제 2 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 6 조 여신거래 약정 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5)}이 제한됩니다. 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5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6>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실행일 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 조 제 2 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	